

## 부천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5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
제출자 : 환경건설위원회

**1. 제안이유**

-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
- 97. 9. 9 규제완화 일환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골자**

-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중 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

## 부천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9. 판매시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) (생략)</p> <p>1 ~ 8 (생략)</p> <p><u>9. 판매시설(농·축·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)</u></p> <p>10 ~ 20 (생략)</p>	<p>제36조(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1~ 8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9. 판매시설</u></p> <p>10 ~ 20 (현행과 같음)</p>